UNITED NATIONS enab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문화공동체,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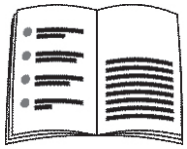




이 문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로서 법적 문서는 아닙니다. 협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혹은 국가들이 따르기로 서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협약 전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약 전문은 국문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번역본이 이 책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영문의 경우 UN enable 웹사이트 (www.un.org/disabilities)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약의 정식 명칭은 국문의 경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고 영문의 경우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입니다. 그러나 흔히 이를 줄여서 국문의 경우 '장애인권리협약' 영문의 경우 'UNCRPD' 라고도 합니다. 이 해설서에서는 줄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2008년 국제법으로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 2009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례

1 장애인권리협약 · · · · · 06
2 협약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 이해하기 · · · · · 07
3 협약의 기본적인 원칙 · · · · · 08
4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해야 할 일들 · · · · · 10
5 평등 · · · · · 12
6 평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여성 · · · · · 13
7 평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아동 · · · · · 14
8 장애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 · · · · 15
9 접근성 · · · · · 17
10 생명에 대한 권리 · · · · · 19
11 응급상황 · · · · · 19
12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기 · · · · · 20
13 사법적으로 동등한 접근 · · · · · 22
14 자유롭고 안전하기 · · · · · 23
15 고문당하거나 잔인한 대우를 받지 않기 · · · · · 25
16 이용당하거나 학대받지 않기 · · · · · 26
17 장애인을 '사람 먼저'의 방식으로 대하기 · · · · · 28
18 어디서 살고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지를 선택하기 · · · · · 29
19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 · · · · 30
20 이동하기 · · · · · 32
21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 · · · · 33
22 사생활 · · · · · 35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 · · · 36
24 교육 · · · · · 38
25 건강 · · · · · 41
26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 · · · 43

27 일하기 · · · · · 44
28 생활수준 · · · · · 47
29 정치 참여 · · · · · 49
30 스포츠와 여가활동 · · · · · 51
31 정보 · · · · · 53
32 다른 나라들과 서로 도우며 일하기 · · · · · 54
33 협약 실현하기 · · · · · 55
34 장애인권리위원회 · · · · · 56
35 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한 나라들의 보고서 · · · · · 57
36 보고서를 낸 후 일어나는 일들 · · · · · 58
37 위원회와 함께 일하기 · · · · · 59
38 위원회가 다른 기관들과 일할 방법 · · · · · 60
39 위원회 보고서 · · · · · 61
40 협약을 약속한 나라들의 회의 · · · · · 61
41 보고서 및 정보 보관 · · · · · 62
42 협약에 대한 서명 · · · · · 62
43 동의와 승인 · · · · · 63
44 국가들의 연합체 · · · · · 64
45 협약은 언제 시작되는가? · · · · · 64
46 협약 지키기 · · · · · 65
47 협약의 내용을 고치고 바꾸기 · · · · · 65
48 국가가 협약을 탈퇴하길 원하는 경우 · · · · · 66
49 이용 가능한 정보 · · · · · 66
50 협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 · · · · 66

부록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 · · · 68

01 장애인권리협약





이 협약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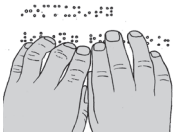
Tip

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본문과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본문은 다시 서문과 50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선택의정서는 주로 협약과 관련된 조사절차나 진정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부속문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의정서가 담고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반대로 아직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협약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 이해하기

02





- **의사소통이란** 컴퓨터나 읽기 쉬운 형식 또는 점자 등과 같이 장애인들이 말하거나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을 말합니다.
- **차별이란** 장애인이란 이유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조정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언어란**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방식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화도 포함됩니다.

Tip

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은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과정에서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지만 하나의 문구로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는 대신에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개방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03 협약의 기본적인 원칙



-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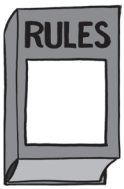
Tip

협약이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이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차별의 의도나 목적뿐만 아니라 효과와 결과도 포함됩니다. 즉,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해도 그 효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04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해야 할 일들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장애인이 실제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법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 장애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모든 정책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본 협약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본 협약에 있는 일들을 반드시 수행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 시설물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아니면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보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본 협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 모든 국가는 장애인이 집이나 교육, 의료 서비스를 동등한 권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모든 국가는 새로운 법이나 정책들을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Tip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인가?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가입국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국내의 차별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과 규칙뿐만 아니라 관습과 관행(행위)까지도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5 평등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Tip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일까?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당한(합리적인) 편의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여성

06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자 어린이나 어른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자 어린이나 어른들이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Tip

장애여성이 처한 여러 차별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면서 장애여성의 폭력노출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07 평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아동



국가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아동들과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는 장애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장애아동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Tip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란?

장애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의 부모나 관련자가 아닌 아동 본인에게 최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애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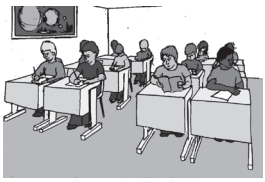
국가는 장애인이 그 누구와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일들을 할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일부 사람들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모든 어린이들에게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를 가르칩니다.



• 언론매체가 장애인을 바르게 묘사하도록 합니다.



• 장애 인식 개선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Tip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바라보았던 이전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약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통합사회를 구축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통합 사회 구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근절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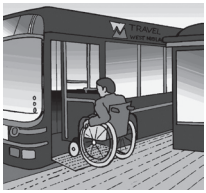
접근성

09

국가는 장애인이 삶의 모든 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병원이나 학교, 교통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표시들은 쉬운 형태로 나타내어야 하며 점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공건물에는 수화 통역사를 비롯한 안내인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 공공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게 계획해야 합니다.



- 접근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들이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장애인의 접근성이란?

장애인의 접근성이란 모든 생산품이나 도구, 서비스 또는 환경에 있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여기에는 건축물 등 건축 환경에 대한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이 모두 포함됩니다.

10 생명에 대한 권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을 살 똑같은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Tip

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은?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태아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커다란 사회적 쟁점인 존엄사의 허용도 장애인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문제입니다.

11 응급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과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Tip

우리나라의 장애인 안전대책은?

우리나라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미비로 화재 등에 의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종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에 대한 장애인의 안전대책이 아직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수립 ·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2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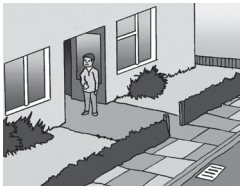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이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 자기 재산을 갖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권리



• 자기 자신의 돈을 관리할 권리.



•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 자기 집이나 돈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

Tip

장애인의 법적 능력은 일부 제한되어야 할까? 아니면 예외없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까?

장애인권리협약 논의 당시에 주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놓고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일부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논쟁이 있었으며, 결론적으로는 법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는 선에서 절충된 문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예외없이 인정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 사법적으로 동등한 접근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법원에 출두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혹은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법원이나 경찰서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교육을 해야 합니다.

Tip

사법적으로 동등한 접근이란?

사법부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사법절차를 이용할 때 사법기관 접근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점자 문서, 큰활자체, 음성안내서비스, 수화통역사 지원, 진술조력인,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된 사법절차 안내문이나 안내 장치 등 편의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자유롭고 안전하기

1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로워야 하며 안전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갇혀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그래야만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일 장애인이 갇혀져 있다면, 장애인은 본 협약이 말하는 방식대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장애인도 국제 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권리를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게 재판받기 위한 도움과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똑같이 재심할 수 있습니다.

Tip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곳은?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과 정신보건시설(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의 탈시설 및 탈원화 정책이 수립 ·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생활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문당하거나 잔인한 대우를 받지 않기

15



장애인은 잔인한 대우를 받거나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실험되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의료적 실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장애인이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가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Tip

장애인의 자발적인 동의란?

장애인의 자발적인 동의는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그러한 정보를 확실히 이해했다는 평가, 그리고 강요나 조작에 의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모두 충족될 때를 말합니다.

16 이용당하거나 학대받지 않기



국가는 장애인이 가정에서나 집 밖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노력을 해야 하며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발견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을 돕는 서비스를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는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학대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가 학대의 경우를 발견하고 학대자들을 법정에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반드시 갖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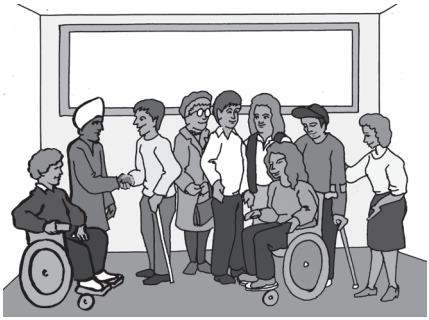
국가는 특별히 장애여성이나 장애아동들에 대한 학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Tip

폭력, 착취, 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포함되고, 착취는 성적 착취와 경제적 착취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학대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넓게는 방임, 방치, 유기, 성추행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7 장애인을 '사람 먼저'의 방식으로 대하기



장애인의 마음과 몸은 그들 자신의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Tip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그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온전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장애인의 온전함을 존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지를 선택하기

18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고 또 이사 다닐 수 있습니다.
- 한 국가의 시민으로 소속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 예를 들자면 여권과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기 나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 장애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을 가질 권리와 시민이 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국가는 장애인이 어떻게 살 것이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랑 함께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장소, 예를 들자면 쉼터 같은 데에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활동 보조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지원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 그리고 어떤 사회서비스를 받으며 살지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20 이동하기







국가는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자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보조 장치나 도우미를 제공하기
- 이러한 장치나 서비스가 너무 비싸지 않도록 할 것
- 어떻게 이동하는 지에 대해 가르치기
- 이동 보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장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한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게 하기

Tip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동권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고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편의 계획수립의 기준과 이행의 강제력이 없어서, 대부분 예산논리에 의한 임의의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 조차도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이며, 장애인 이동편의의 지역 간 편차도 여전히 큽니다.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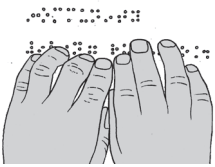
21



국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정보를 발견하고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가령 쉽게 풀어쓴 해설서 같은 방식.



- 수화나 점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 다른 서비스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매체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 수화를 사용하도록 도울 것.

Tip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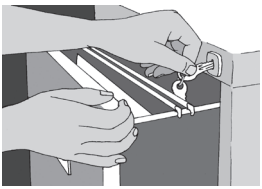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만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만 제공하면서 대체 의사소통 수단 제공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언어적 수단을 활용하는 장애인에게 그 스스로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해 대체 수단을 활용할 때 장애인 개인에게 추가로 비용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생활

22



장애인은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혹은 개인적인 정보로 잘 보호해야 합니다.

Tip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생활이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생활을 이유로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국가는 장애인이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만들고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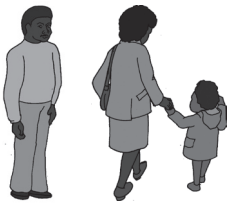
- 장애인은 두 사람이 원하는 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은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지, 언제 나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임시술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은 가족계획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런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가는 장애인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 어린이들은 자기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장애아동과 가족을 지원해야 합니다.

- 어린이의 권리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국가는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별도로 명령하지 않는 이상, 아동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로부터 따로 떨어져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은 단지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내져서는 안 됩니다.

Tip

장애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친인척 등의 확대가족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만일 확대가족의 보살핌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대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대안적 돌봄에는 위탁가정이나 그룹홈 등이 포함됩니다.

24 교육









장애인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일반학교에 갈 기회를 갖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 장애인이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켜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기.
- 장애인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에서도 제외되지 않기.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는 지역의 학교를 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게 하기.



- 가능한 최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 장애인이 공부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 사람들이 점자를 배울 수도 있으며 그 외로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들을 배울 수 있게 하기.
- 사람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며 수화를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로 보기.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또한 배우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 선생님들이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갖게 하기.
- 장애아동이 어른이 되어서도 원한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움을 제공하기.

Tip

통합교육이란?

2005년 유네스코(UNESCO)는 "모두를 위한 교육 접근권의 보장(Ensuring Access to Education for All)" 을 발표하면서 통합(Inclusion)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통합은**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과 문화,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교육 내부에서의 배제 및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이 가진 욕구의 다양성을 다루고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통합은 적절한 연령 범위의 모든 아동을 포괄한다는 공통의 비전과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일반교육체계의 책임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교육내용과 접근법, 구조 및 전략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강

25



장애인은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
-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나 생명 보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서비스나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

Tip

우리나라가 약속하지 않은 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내용이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26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자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서비스나 직업,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가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살펴보고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런 서비스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 직원들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는 장애인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장비나 보조기기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Tip

장애인의 재활과 가활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은 재활과 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기능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과 가활은 모두 장애인의 기능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재활이 주로 태어난 이후 갖게 된 장애에 대한 기능적 회복을 뜻하는 데 비해, 가활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능향상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7 일하기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직장에서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우받게 하는 법을 만들 것.



-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규정, 보수에 대하여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할 것.
- 다른 사람들과 마차가지로 장애인이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 업무와 관련 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 장애인이 일자리를 발견하고 그 직업을 유지하며 또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 장애인이 자신의 사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것.
- 장애인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병원 같은 곳에 있는 일자리를 줄 것.



- 회사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도와줄 것.



- 장애인이 일하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일하도록 할 것.



• 장애인이 일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이 일터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



• 국가는 장애인이 돈을 받지 않고 강제로 일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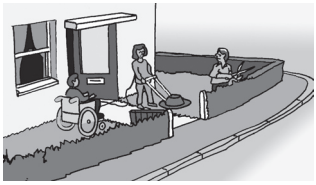
Tip

적극적인 우대조치로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3%, 민간부분 2.7%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의무고용율을 미달할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은 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 소방 · 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여전히 공공부분의 장애인 고용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수준

28



장애인은 장애인 자신과 가족들이 좋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과 옷, 집, 깨끗한 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필요한 보조기구나 적절한 서비스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특히 장애를 가진 여자 어린이나 여자 어른, 나이든 사람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가난한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생기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은 공공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퇴직 연금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Tip

장애인이 누려야 할 적절한 생활수준이란?

장애인의'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빈곤 및 취약성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노동시장의 활성화,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저하, 소득의 감소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적 보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보호 정책을 잘 펴나갈 때 장애인은 비로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

29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치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은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표하는 것이 쉬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는 비밀 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정당이나 비정부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Tip

투표할 권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투표할 권리가 있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법원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투표할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와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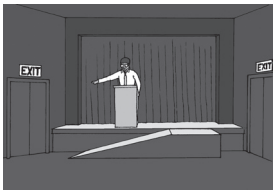
30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책과 같은 자료들이 장애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이나 영화 연극 같은 문화 활동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박물관과 같은 장소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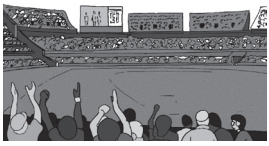
- 장애인은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예술인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이나 제도들은 장애인이 책이나 영화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농문화와 다른 장애인 문화가 존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들이 일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스포츠나 다른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는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 어린이 또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농문화란?

농문화를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deafness)와 수화의 사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특정한 사회적 신념과 행동, 인문학적 전통, 가치, 농인 공동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농문화의 옹호자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장애로 여기기보다는 인간 경험의 차이 내지 다양성으로 바라봅니다.

정보

31



국가는 이 협약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반드시 비밀로 그리고 사적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은 정보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ip

국가가 모아야 할 정보란?

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가 수집해야 할 적절한 정보로 통계자료와 연구자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장애 출현율을 들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15%정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은 총인구 대비 약 5%로 보고되고 있어서, 국제적인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다른 나라들과 서로 도우며 일하기



국가는 이 협약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다른 나라들과 서로 도우며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 함께 일하는 과정에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할 것.



- 국가들은 정보나 경험, 교육을 함께 나눠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들은 함께 연구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Tip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국제협력이란?

장애인권리협약은 이 협약에 담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협력뿐만 관련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약 실현하기

33

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 협약이 약속한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부서를 정부 안에 둘 것.



- 협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 관찰하는 과정에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

Tip

우리나라의 협약 책임부서, 조정기구, 감독기구는?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의 이행을 담당할 전담부서와 정부 내의 조정기구, 그리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이 전담부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조정기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독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34 장애인권리위원회



이 특별한 위원회는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참여하여 선출합니다. 이 위원회는 유엔에 사무실을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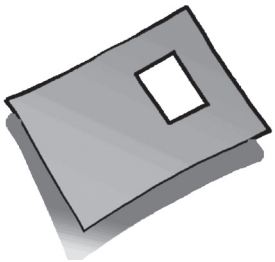
Tip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은 최대 18명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한 나라들의 보고서

35



국가는 저마다 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써서 약속한 지 2년 안에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 첫 보고서를 보낸 후에는 4년마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 위원회는 국가가 어떤 정보를 보고서에 써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 또한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Tip

우리나라의 첫 국가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첫 국가보고서는 2011년 6월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14년에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6 보고서를 낸 후 일어나는 일들





위원회는 보고서를 잘 살펴본 다음에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과 충고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고서가 아주 늦어질 경우, 위원회는 3개월 후에 그 나라를 찾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 모든 나라들은 위원회에 보내진 모든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 각 나라는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보고서를 보고 위원회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그 나라의 다른 부서나 기관에 보낼 것입니다.

Tip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사 과정

국가보고서가 제출되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연례 정기회의의 한 회기 동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검토 결과 추가적인 질문들을 쟁점목록의 형태로 해당 국가의 정부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쟁점목록에 대해 해당 정부가 서면으로 응답을 하면, 위원회는 시민단체 등 다른 출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후 정부대표들을 불러 국가보고서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심사 후 최종견해를 작성해서 공개합니다.

위원회와 함께 일하기

37



각 나라는 위원회와 함께 일할 것이며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 위원에게 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38 위원회가 다른 기관들과 일할 방법



이 협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정부의 다른 부처와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도록 위원회에 초청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다른 인권 기관에게 기관이 하는 일들이 이 협약을 실현하는 데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Tip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협력기관들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협력적으로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들로는 장애인특별보고관, UN인권고등판무관실, 장애와 교육은 유네스코(UNESCO), 장애와 노동 분야는 국제노동기구(ILO), 장애와 건강은 세계보건기구(WHO), 장애와 개발은 세계은행 및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을 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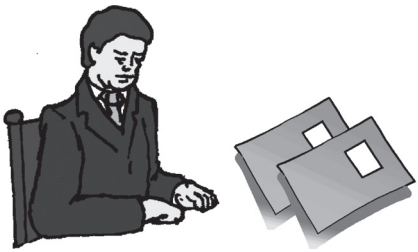
39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생각을 포함할 것입니다.

40 협약을 약속한 나라들의 회의

위원회는 2년마다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생각을 포함할 것입니다.

41 보고서 및 정보 보관



유엔 사무총장은 협약에 대한 보고서와 모든 정보를 보관합니다.

42 협약에 대한 서명



모든 나라는 2007년 3월 30일부터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협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 동의와 승인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이후 언제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할지를 결정합니다. 가입하는 때가 바로 협약이 그 나라에서 제대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아직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도 협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Tip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은 2013년 10월 현재 137개국이 비준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선택의정서는 78개국에서 비준하고 있습니다.

44 국가들의 연합체





어떤 나라들은 유럽연합과 같은 기구에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협약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또한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가들이 만나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45 협약은 언제 시작되는가?

협약은 20개 국가가 가입한 후 30일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Tip

협약의 비준, 가입, 발효의 차이는?

국가가 조약에 구속됨을 동의하는 행위인 비준 · 가입과 조약의 발효와는 구별됩니다. 비준 · 가입은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을 통해 조약의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할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조약의 발효란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준은 2008년 12월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 지키기

46



국가는 협약의 진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Tip

국가가 동의를 유보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

우리나라가 협약 제25조의 보험관련 조항의 비준을 유보한 것처럼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나라가 특정 조항의 비준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고치고 바꾸기

47



어느 나라도 협약의 내용을 바꾸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을 글로 써서 전달하면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국가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회의를 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48 국가가 협약을 탈퇴하길 원하는 경우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협약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도달한 지 1년 후에 그 국가는 협약의 구성원이 아니게 됩니다.

49 이용 가능한 정보

이 협약은 이해하기 쉬운 양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50 협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협약은 아랍어나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출판될 것이며 내용은 똑같을 것입니다.

[부록]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효일 2008.5.3] [다자조약, 제1928호, 2009.1.9]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 지역적 ·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

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 · 민족 · 토착지역 · 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

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 · 음성언어 · 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제4조 일반 의무

1.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

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장애여성

1.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 접근성

1.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 · 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3.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 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교육

1.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

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가활 및 재활

1.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 ·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 · 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1.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

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 ·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

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 · 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8.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회의

1.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 유보

1.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

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책은 Inspired Service에 의해 제작된 영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해설서 '쉽게읽기(EASY READ)'판 (2007년 11월 발행)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입니다.

책자에 사용된 삽화는 'Valuing People Clipart Collection'에서 발췌되었으며 이 삽화의 사용은 Inspired Service 출판부의 허락 없이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삽화 출처 : www.inspiredservices.org.uk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발행일 2013년 10월 20일
발 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문화공동체,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원서명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기획, 번역 및 감수 전국장애인부모연대(김기룡, 김치훈, 이리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서동운)
제 작 리드릭 02-2269-1919
※ 이 책은 한국장애인재단의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SBN 978-89-965662-5-0 (9333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 책은 한국장애인재단 의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93330
9 788996 566250
ISBN 978-89-965662-5-0